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8. 25.(수)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 자	• 과장 정태성, 사무관 조영진, 주무관 전현진 • ☎ (044) 200-5845, 5815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 9. 1.~11. 30. 3개월간 시행, 해당 지역 입항 국적선은 사전에 대비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회 48개 회원국이 9월 1일(수)부터 11월 30일(화)까지 3개월간 공동으로 선박복원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 항만국통제 협의회 21개국

** 유럽지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회 27개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특정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선박복원성' 분야가 집중점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 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3일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5, 5815)나 한국선급 검사업무팀(070-8799-8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질문서

선박복원성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CIC) 질문서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 아·태지역(T-MOU) 및 유럽지역(P-MOU) 공동실시 -

점 검 청			
선 명		IMO번호	
점검일자		점검항만	

번호	질 문	Yes	No	N/A	Detention
1*	선박에 승인된 복원성 자료가 제공되어 있으며, 선장 및 화물담당사관은 관련사항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2*	출항 전 복원성 점검에 사용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한가?				
3*	선박이 선종에 따른 복원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4*	선장 또는 책임사관이 승인된 복원성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복원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가?				
5*	선박에 복원성계산기기가 설치된 경우, 주관청에 의해 승인되었는가?				
6	선박에 복원성계산기기가 설치된 경우, 사용중인 복원성 소프트웨어의 형식이 관련 선종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7**	선장/화물담당사관이 "계산된" 배수량 및 트림이 "실측된" 흘수와 일치함을 확인한 증거가 선박에 있는가?				
8**	선박에 복원성계산기기가 설치된 경우, 적어도 하나의 승인된 시험조건을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복원성계산기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가?				

■ 참조

* 별표 한 개(*)로 표시된 질의(1~5번) : 질의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출항정지 가능

** 별표 두 개(**)로 표시된 질의(7~8번) : 출항정지가 고려되지 않으며 정보제공의 목적



CIC on Ship's Stability in General			
Inspection Authority			
Ship Name		IMO Number	
Date of Inspection		Inspection Port	

QUESTIONS 1 - 6 ANSWERED WITH A "NO" MUST BE ACCOMPANIED BY A RELEVANT DEFICIENCY ON THE REPORT OF INSPECTION

No.	Questions	Yes	No	N/A	Detention
1*	Has the ship been provided with approved stability information which can be understood and easily used by the Master and loading officer? (01326)				
2*	Is the data used in the stability check for departure complete and correct? (01316, 02134, 06102)				
3*	Does the ship comply with the stability criteria as applicable to the ship type? (02134)				
4*	Is there evidence to show that the Master or responsible officer can determine the stability of the ship under varying conditions of service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formation provided on board? (06107, 10133)				
5*	If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tability Instrument, is it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02103)				
6	If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tability Instrument, does the type of stability software in use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relevant ship type? (02103)				

No.	Questions	Yes	No	N/A
7 Note 1	[Is there evidence on board to show that the master/loading officer confirms that the "calculated" displacement and trim corresponds with the "observed" draughts?]			
8 Note 1	[If the ship is provided with a Stability Instrument, has the accuracy of the stability instrument been verified periodically by applying at least one approved test condition?]			

If "No" is ticked for questions marked with an asterisk "*", the ship may be considered for detention

Note 1: Questions 7 and 8 are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